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9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【집행부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1. 4. 27.

기획행정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세무과)
- 제출일자: 2021. 4. 8.
- 회부일자: 2021. 4. 9.
- 검토기간: 2021. 4. 12. ~ 4. 16.(5일간)

2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고,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동시에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“주민세 재산분” 을 “주민세 사업소분”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- 입법예고(2021.3.11.~ 3.31.) 결과: 의견 없음

- 조례 · 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개편 내용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이 일부개정 (‘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고,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 관 계 법령 】

□ 지방세기본법

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세목)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광역시의 군(郡)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.

1. 보통세

- 가. 취득세
- 나. 레저세
- 다. 담배소비세
- 라. 지방소비세
- 마. 주민세
- 바. 지방소득세
- 사. 자동차세

제11조(주민세의 특례) 광역시의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.

□ 지방세법

제3절 사업소분

제80조(과세표준)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
- 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- 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
- 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- 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- 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- 4) 그 밖의 법인: 5만원

2. 연면적에 대한 세율: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제82조(세액계산)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83조(징수방법과 납기 등)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.

-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(이하 이 조에서 “납부서”라 한다)를 발송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.
-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제84조(신고의무)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개편 내용

□ 주요 내용

-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*하고,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

*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→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

- 또한,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*하고, 재산분의 명칭을 “사업소분”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(균등분 8월, 재산분 7월 ⇒ 개인분·사업소분 8월)

주민세 (기존)			주민세 (개정)		
구분	납세 의무자	세율체계	구분	납세 의무자	세율체계
시세 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	지세 개인분 (8월)	<좌 동>	
	개인사업자 법인	5만원 5~50만원		사업자	기본세액(5만원) + 사업장 연면적 × 250원/m ²
구세 재산분(7월)	사업자	사업장 연면적 × 250원/m ²	구세 종업원분 (매월)	<좌 동>	
구세 종업원분 (매월)	사업자	월급여총액 × 0.5%			

□ 세목별 개요 (법 개정 이후 주민세 개인분만 市稅)

○ (사업소분 개인사업주 주민세)

* 과세기준일(7.1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: 5만원

○ (사업소분 법인사업주 주민세)

* 사업소분 법인사업주의 기본세율 과세기준 : 법인의 자본금(출자금)에 따라 차등 과세됨
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 : 5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: 10만원
-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 억원 초과 : 20만원

○ (사업소분 사업장 주민세)

* 신고·납부기준 : 과세기준일(7.1) 현재 330m²초과 사업소 연면적 × 250원

○ (종업원분 주민세)

* 신고·납부기준 :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급여총액(1.5억원 초과시) × 0.5%